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032-440-1722)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560-476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4. 4. 8.

##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# 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수질오염방지시설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#### 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

###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수탁 처리업시설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274일원	1,434	증)1,839	3,273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17호 (2015. 5.26.)	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수질오염 방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면적 증가</li> <li>- 위치: 석남동 223-274번지 일원</li> <li>- 면적: 1,434m<sup>2</sup> → 3,273m<sup>2</sup> (증) 1,839m<sup>2</sup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질오염방지시설 현대화, 폐수 처리방법 개선, 직원 휴게·복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한 부지 확장</li> </ul>

### 4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.)

○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